(이륜차)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

1. 법적 준수사항(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)

- (**보호구의 지급**)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·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
  (안전보건 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)
- **(보호구 관리)**사업주는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늘 사용할 수있도록 관리하여야 함
  (안전보건 규칙 제33조제1항)
- (**탑승의 제한**)사업주는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됨
  (안전보건 규칙 제86조제11항)
- **(고용주 의무)**사업주는 배달종사자의 무면허, 음주, 과로 시 운전을 하도록 시켜서는 안 됨
  (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)

2.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

- 배달앱으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**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**를 하여야 함

① 배달앱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**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**
② 배달앱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* 등 **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**
*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,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
③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에 **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**

» 벌칙 배달앱으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가 안전보건조치위반 시 **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 부과

운행 중 신호위반 또는 과속

전방주시 및 확인 미흡

승차용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

운행 중 휴대폰 통화, 한 손에 배달물을 든 채 운행하는 등 불안전한 행동

이륜차 안전모착용,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